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1. 계약의 목적

노인성 질병 및 고령에 의한 원인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급여 제공으로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건강증진 활동을 통한 잔존능력을 유지케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돌봄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부양자의 삶의 질도 향상 시키고자 한다.

2. 이용대상자

◆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미만의 자가,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으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등급 판정을 받은자
- 2. 노인성 질환이나 노령에 의해 심신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급여 범위

방문 요양 급여는 장기요양 요원이 주거지를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인지지원 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

4. 이용계약

서비스 이용 전 장기요양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배상 책임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5. 장기요양 계약의 해지

- 계약 기간이 만료 되거나 사망했을 때.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판정 변경이 발생 하였을 때.
- 감염병 환자로 판정되어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단 될 때.
- 건상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요양요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할 때.
- 계약 해지는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내 유선으로 할 수 있다.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2026년 월 이용 수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676,320원

◆ 본인부담금

-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6% 또는 9%

◆ 그 밖의 이용 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 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의 협의로 한다.

7.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인의 권리

- 1)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2)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급여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 1)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요청 받을 경우 기관에 제공할 의무
- 2) 대상자의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 인적사항 변경등에 대해서 기관에 즉시 통부할 의무 등

- 권리

- 1) 이용자의 건강 상태 등에 관한 정보 제공받을 권리
-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 계획 결정에 참여할 권리
- 3)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4) 이용자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의무

- 1) 이용자의 건강 및 서비스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교육의 의무
- 2) 이용자의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 부담 의무
- 3) 개인 정보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 대리인 선정의무
- 5)그 밖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계약의 해지

-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했을 때.
-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4) 배회성,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재가 서비스가 힘들때
-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겼을 때.□